

- 【서류명】 PCT-PPH에 의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 【대상국가】
- 【본원출원번호】
- 【국제출원번호】
-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
- 【제출서류】
-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
-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
- 【서류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번역문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
- 【서류명 및 통지일】
- 【서류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번역문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
- 【명칭】
- 【제출여부】
- (【제출생략 이유】)
-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

※ 기재요령

1. 【대상국가】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가 수행된 대상국가(대한민국, 미국) 중 어느 한 국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국제출원번호】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되고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허청구범위를 포함한 국제출원’(이하 ‘대응국제출원’이라 한다)의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을 적습니다.
- 예) 【국제출원번호】 PCT/US2011/123456, 2011. 1. 1.
3.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란에는 본원출원이 대응국제출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 예1)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대한민국의 국내단계에 진입한 대응국제출원의 분할출원이 본원출원에 해당합니다.
- 예2) 【본원출원과 대응국제출원의 관계】본원출원은 대응국제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한 특허출원에 해당합니다.
4.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명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가. 【서류명 및 제출(발행)일】란에는 해당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서류의 종류와 제출일, 공보발간된 경우 공보번호와 공개일 등을 함께 기재합니다.
-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특허청구범위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특허청구범위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다. 해당 특허청구범위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특허청구범위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

아 합니다.

예1) 【서류명 및 발행일】 WO/2011/123456(2011. 1. 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OOOO에서 영어 번역문이 제공되므로 제출생략

예2) 【서류명 및 제출일】 보정서, 2011. 1. 1자로 국제사무국에 제출

【서류제출여부】 제출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5.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 서류명(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서류명 및 통지일】란에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와 관련하여 통지된 서류의 명칭, 통지일 등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예. Patentscope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 관련통지서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서류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다. 해당 통지서가 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제출여부】란을 만들어 ‘제출’로 기재하고 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정보통신망에서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번역문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 가능한 이유를 기재합니다.

라. 우선심사신청 후 심사관이 해당 통지서를 입수할 수 없거나 국문 또는 영문 번역이 불충분하여 보완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 【서류명 및 통지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2011. 1. 1.

【서류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심사관이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번역문제출여부】 제출

6.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인용된 선행기술문헌】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및 제출여부를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가. 【명칭】란에는 인용된 선행기술문헌의 종류, 공개일(공보일)을 기재합니다.

나. 【서류제출여부】란에는 ‘제출’로 기재하고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선행기술문헌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특허문헌(비특허문헌은 제출)은 제출생략이 가능하므로 【제출여부】란에 ‘제출생략’으로 기재하고 【제출생략 이유】란에 생략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명칭】 JP2000-123456(2000.01.01), US2004/348454(2004.05.04)

【제출여부】 제출생략

【제출생략 이유】 특허문헌으로 용이하게 입수 가능하므로 제출생략

【명칭】 3GPP TR 29.802 v7.0.0 'Technical Specification Group Core Network and Terminals: (G)MSC-S-(G)MSC-S Nc Interface based on the SIP-I protocol, JUNE 2007(sections 5.7 and 5.8)

【제출여부】 제출

7. 【청구항간 대응관계설명표】란에는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대응되는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응관계 설명 부분에는 양 청구항의 동일 여부 또는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본원출원의 청구항 번호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된 청구항 번호	대응관계 설명
1	1	양 청구항은 동일
2	2	"
3	3	"
4	5	양 청구항은 기재형식의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
5	6	"
6	4	"
7	1	청구항 7은 대응 청구항 1에 A라는 구 성이 부가됨

8.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관련설명】란에는 본원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제8기재란(Box VIII)에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원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위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제8기재란의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는 ‘청구항 제X항은 청구항 제Y항의 A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기 A는 청구항 제Y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X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Z항은 견해서에 기재된 청구항 제Y항에 대응되는 본원출원의 청구항 제W항의 B를 인용하도록 보정되었으므로, 상기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에서 청구항의 지시하는 바가 불명확하다는 사유는 해소되었습니다.